

01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무죄율 1위, 대법원 파기환송률 1위

03 (기획특집)

부동산 PF와 담보대출확약

08 (노동칼럼)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12 (¡Hola! 중남미)

브라질 진출 시 조세 관련 사항

17 (살라맛 필리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관

22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24 (주목! 이 판례)

판결 영업권 보상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26 (최신법령)

1.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2. 근로계약 변경 시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에 대한 예외의 범위 확정 등

28 (지평지성 단신)

임승혁 회계사, 'M&A 세법 실무' 발간

28 (지평지성 단신)

배성진 변호사, '제조물책임법' 강의

29 (지평지성 단신)

김성수 변호사, 제5차 전자소송제도연구 특별위원회에 참석

30 (영입인사)

- 김태성 자문위원

31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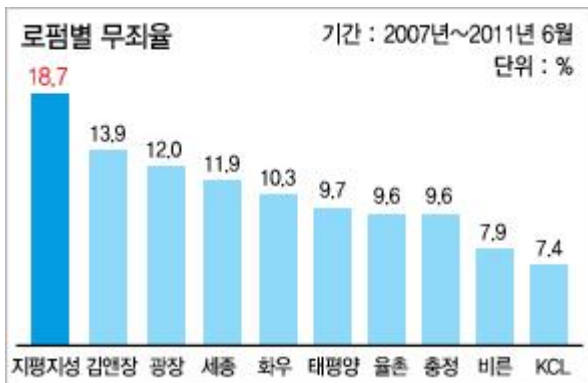
- 권용숙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무죄율 1위, 대법원 파기환송률 1위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근 5년간 무죄율 1위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6월) 우리나라 10대 로펌 중 재판결과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법무법인 지평지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으로 423건 중 79건에서 무죄를 받아내 18.7%의 무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법원 파기환송률 1위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조선일보가 발표한 작년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 중에서도 파기환송률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파기환송률은 로펌의 공격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원심을 뒤집은 '역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13건 가운데 4건에서 승소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내 30.8%의 파기환송률을 보였습니다.

2009년 한해 대법원 사건의 분야별 파기환송률이 민사사건은 7.5%, 행정사건은 10.5%, 특허 사건은 9.7%, 형사사건은 2.9%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지평지성의 파기환송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소송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무죄와 파기환송률이 높은 것은 어려운 사건일수록 잘 해결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소송업무를 비롯한 법률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기사]

- 리걸타임즈 - 형사공판 무죄율 1위 지평지성(2011. 9. 28.)
- 조선일보 - 지평지성, 대법원 파기환송률 1위(2010. 8. 29.)

Jipyong & Jisung

(기획특집)

부동산 PF와 담보대출확약



이승현 변호사

1. 국내 부동산 PF 부실의 원인

국내의 부동산 PF는 사업부지 매입비와 초기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총사업비 전체를 차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공사비의 지급과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PF 약정에서는 공사비가 부족할 위험은 책임준공보증을 통한 외상공사로 그 위험을 해결하여 왔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부족이 발생할 위험은 시공사의 신용공여, 즉 연대보증, 채무인수, 책임분양보증 등의 약정을 통한 시공사의 자금투입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는 부동산 PF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및 분양 위험을 모두 시공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국내의 부동산 PF에 대하여 '시공사 보증대출'이라고까지 그 성격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분양 저조로 인하여 현금흐름의 창출에 실패할 위험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상의 취약성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많은 건설회사가 Work-out,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담보대출확약부 부동산 PF의 의의

기존의 부동산 PF가 그 구조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이후, 사실상 부동산 PF는 시장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PF가 일어난 그 배경이 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은 지금도, 지금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의미로서의 부동산 PF는 그 구조상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 존재하는 한 적절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PF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동산 PF의 새로운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시공사에 집중된 신용보강의무를 해소하여 시공을 담당할 건설회사의 책임을 시공부분 및 공사비 미지급(사실상은 지연지급 또는 대물지급)에 한정하면서도 대출원리금의 안정적 회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0년부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확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PF 약정은 담보대출확약기관이라는 제3의 계약참가자를 끌어들이 위와 같은 요구를 일부라도 만족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PF를 설계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담보대출확약부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던 분양 위험의 일부를 줄이고 줄어든 분양 위험을 담당할 새로운 주체인 담보대출확약기관을 부동산 PF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부동산 PF에는 없었던 새로운 참가자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참가자에게 역할에 맞는 수익구조를 제시한 것입니다.

3. 담보대출확약부 부동산 PF를 위한 조건

담보대출확약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PF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모두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담보대출확약부 부동산 PF를 검토에 있어서 아래에 기재된 조건을 부동산개발사업이 충족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부동산개발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확약기관의 입장에서도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개발사업 자체의 사업성, 즉 시장에서의 평가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담보대출확약이 부동산 PF에서 하는 역할은 분양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해소하여 적절한 매도시기를 찾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시공사의 책임준공 능력

시공사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책임준공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담보대출확약은 준공 후에도 미분양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확약하는 것이므로 건설위험은 여전히 시공사에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비용을 들여 확보한 담보대출확약이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담보대출확약기관의 신용력

담보대출확약기관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용이 있는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담보대출확약에 따른 담보대출은 확약하는 날로부터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기간 동안 담보대출확약기관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채로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담보대출확약과 관련한 문제

담보대출확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제한

담보대출확약은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확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 중 자본시장법 상의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이나 법인('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대출확약 자체가 여기서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담보대출확약만으로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담보대출확약서의 작성시 실제 담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상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금융기관(예를 들면, 투자매매업에 대한 인가만을 받은 투자증권회사)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담보대출확약을 할 수 없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주선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로 하여금 준공된 미분양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보장약정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실상 담보대출확약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책임준공보증의 범위

부실화된 부동산 PF에서 건설회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공사는 부동산 PF에서 체결하는 계약 문구의 의미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가 가능한 시공사는 과거와 달리 책임준공보증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실제 민감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인허가(착공, 사용승인 등)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행사의 위험으로 볼 여지가 많겠지만, 실제의 판단에 있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업무 분담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가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5. 결어

담보대출확약부 부동산 PF는 담보대출확약기관의 '확약'을 전제로 합니다. 담보대출확약기관은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과 그렇지 않은 개발사업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담보대출확약기관은 대출금융기관보다 건설되는 부동산의 품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서(품질이 담보력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담보대출확약기관이 확약을 하는 시점에 예정하고 있었던 품질 이상의

건물을 요구하게 되어 보다 충실한 시공을 유인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PF는 이제 시공사 의존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가 각자 자신의 역할에 부합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PF가 시장에서 계속 통용되는 금융기법으로 남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부담하였던 시공위험과 분양 위험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모델을 구조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담보대출확약부 부동산 PF는 시공사의 분양 위험을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Jipyong & Jisung](#)

(노동칼럼)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이광선 변호사

1. 개요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최근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회사에만 유리한 내용의 경업금지 약정만을 무분별하게 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니 별 생각없이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경업금지 약정이 문제되어 분쟁으로 번질 경우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업금지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근로자는 무심코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으로 인해 타 기업에서의 근무가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최근 판례의 태도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에 대

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판례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경업금지 약정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할 만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례는 전직금지 약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i)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ii)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위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하급심 판례에서는 전문수탁검사기관인 연구소의 직원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가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아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10588 판결). 보험회사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나.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높은 직급이고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낮은 직급의 근로자보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퇴직경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 자 2010카합188 결정).

다.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경업금지 약정의 제한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경업금지 약정에서 장기간의 제한기간을 정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일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경업금지 약정상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더라도 이런 점만을 이유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고 다른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기간(보통 1년 정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넘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경업제한 지역을 설정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데, 특히 사용자의 영업기반이 특정지역 범위 내 이면서 경업제한 지역을 그 특정지역을 초과하여 전국이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제한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경업제한 직종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전직할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특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 대상조치의 여부

판례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판단 기준으로 사용자가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대상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가합86803 판결).

하급심 판례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10만원~25만원)의 보안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직원에게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적절한 대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7. 자 2010카합1360 결정).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대상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결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경우 오히려 지나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적절한 내용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대상조치를 하고 무엇보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절한 노력(보안조치, 규정 개정 등)을 함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서를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징구할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입사 시점에 이를 받거나 특별한 대상조치를 취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으면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등 경업금지 약정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Jipyong & Jisung](#)

(살라맛 필리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관



김혜라 변호사

1. 들어가며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방식 및 그 내용을 소개해 드렸던 지난 9월 뉴스레터에 이어, 금번 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의 내용과 이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개관해 보고자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약 10여 개에 달하는 국가기관이 각 기관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어느 정부기관에 등록하는지 혹은 수행하는 사업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투자 혜택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구조 및 사업지의 위치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필리핀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의 필리핀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s, "BOI")입니다. 그 이외에도 필리핀 투자청(BOI)의 민다나오 지역 본부 격인 민다나오자치구투자청(PBOI-ARMM), 경제특구관리청(PEZA), 수빅만관리청(SBMA), 클락특구개발공사(CDC), 카가얀경제특구청(CEZA), 잠보앙가경제특구청(ZEZA) 등을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관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유관 기관들 중 필리핀 투자청(BOI), 경제특구관리청(PEZA), 수빅만관리청(SBMA), 클락특구개발공사(CDC)에 등록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위 기관들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필리핀 투자청(BOI)

가. 인센티브 제공 산업 분야

필리핀 투자청(BOI)은 통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에 기초하여 해마다 투자유치우선분야(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를 선정, 발표합니다. 위 투자유치우선분야(IPP)의 내용에 따라 필리핀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누릴 산업 분야가 결정되는데, 이는 필리핀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청(BOI)은 2011년 8월, 아키노 대통령의 승인 하에 다음과 같은 13개의 투자유치우선분야(IPP)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 농업 / 수산업(Agribusiness / Fishery)
- 창작산업 / 지식산업(Creative Industries / Knowledge-Based Services)
- 조선업(Shipbuilding)
- 대단위 주택개발사업(Mass Housing) - 저가형 주택 공급 목적
- 에너지(Energy) - 친환경 기술 이용
- 사회간접자본시설(SOC & Infrastructure)
- 연구개발산업(Research & Development)
- 녹색산업(Green Projects)
- 자동차산업(Motor Vehicles) - 대체연료나 전기 사용 자동차 개발 관련
- 관광산업(Tourism)
- 전략프로젝트(Strategic Projects)
- 민관협력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 재난방지, 경감, 복구 프로젝트(Disaster Prevention, Mitigation and Recovery Projects)

특히 금번 2011년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아키노 정부가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가 새로이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 포함되었다는 점이고, 또한 기존 인프라 산업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 오던 조선업이 선박의 축조뿐만 아니라 수리, 해체까지를 포함하여 새로이 독립적인 산업 분야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수빅의 한진중공업이나 세부의 일본 조선업 투자가 필리핀의 대외 신용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인센티브 내용

필리핀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 기업은 사업 영역에 따라 사업 개시 년도부터 3년 ~ 6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 미진한 지역(LDA)에 투자한 기업은 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세금 면제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의 특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각종 비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인센티브 자격 요건

먼저, 필리핀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누리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행하는 사업이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 해당하는 산업임을 입증하여 필리핀 투자청(BOI)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 등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인 경우 필리핀 현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하고, 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필리핀 현지인이 60%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60% 이상의 이사가 필리핀 현지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출 중심의 기업이거나 투자유치우선분야(IPP)에서 개척 분야(pioneer classification)로 인정 받는 기업일 경우에는 더 높은 외국인 지분율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 투자청(BOI) 등록을 위한 절차나 준비 서류가 까다롭지는 않으나, 필리핀 현지인과의 합작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한국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3. 경제특구관리청(PEZA)

필리핀의 양대 투자 유치 기관으로서, 경제특구특별법(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에 따라 설립된 경제특구관리청의 수장인 경제특구청장은 필리핀 전역에 걸쳐 PEZA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선정된 PEZA경제특구에 등록된 수출지향 기업들은 각종 투자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경제특구청장이 한국 KOTRA를 방문하여 한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던 일을 기억하는데, 그만큼 경제특구관리청(PEZA)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고 또한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관리청(PEZA)에 등록된 기업들은 수출제조기업, IT기업, 관광기업, 의료관광기업 등 영위하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통상, 4년 ~ 6년까지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세 기간 연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세금 면제 기간이 종료한 시점부터는 총 소득의 5%에 해당하는 특별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제특구관리청(PEZA)은 등록 기업들에게 수입/수출 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혜택 등의 비재정적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수빅만관리청(SBMA) 및 클락특구개발공사(CDC)

필리핀 정부는 공화국법 제7227호(Republic Act no. 7227)에 따라 기존에 미군 기지로 사용되던 수빅만 지역과 클락 지역을 상업, 공업,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각 해당 지역을 수빅경제특구와 클락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이를 위해 수빅만관리청(SBMA)과 클락특구개발공사(CDC)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필요한 업무를 위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빅만관리청(SBMA)과 클락특구개발공사(CDC)는 기본적으로 등록 기업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빅경제특구나 클락경제특구 등록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점들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제조업, 관광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100%의 지분을 갖는 회사라도

위 기관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수빅이나 클락 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위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빅만관리청(SBMA)이나 클락특구개발공사(CDC) 등록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인센티브는, 모든 국세나 지방세를 부담하는 대신 총 소득의 5%만을 특별세로 납부하면 되는 세제 혜택이고, 또한 부동산세 감면과 같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수빅만관리청(SBMA)이나 클락특구개발공사(CDC) 등록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별 비자 혜택 등의 각종 비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누릴 수 있습니다.

5.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여하고 있는 필리핀 국가기관은 각 기관 별로 상이한 조건 및 내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투자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가장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825 | 2011. 9. 28.



[Global 트렌드]

수력발전소 건설하는 라오스

태국 등 수출...빈곤 국가 탈피 돌파구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기 공급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인데, 그중 메콩강의 수력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메콩강이 라오스를 가로지르고 있고 산악 지대로 이뤄진 라오스의 지리적 특성상 수력발전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라오스는 수력발전으로 2만MW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

반기일 뉴질랜드변호
사·라오스 사무소장
kiban@jipyong.com

[PDF](#) [e-Link](#)



[Global 트렌드]

'국제 투자 중재' 절차 적극 활용해야

캄보디아에서의 분쟁 해결 방안

유정훈 변호사
· 캄보디아 사무소장
yoojh@jipyong.com

최근 들어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캄보디아 투자로 발생한 법률 분쟁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부분 캄보디아 투자를 주도했던 모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된 것인데, 이와 함께 2006년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5~6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결실이 없는 투자에 대해 투자자 간 혹은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 금융회사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 캄보디아...

[PDF](#) [e-Link](#)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홈페이지)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판결 영업권 보상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1. 판결의 취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제45조),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6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 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수용으로 인해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니다.

원심에서는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경우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이미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법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대상판결은 공익사업법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결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에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는 바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13016 판결). 다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추법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영업권보상](#) [Jipyong & Jisung]

(최신법령)

1.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197호, 2011. 9. 30. 시행)

1. 정부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가입자(적격투자자)를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였습니다(제272조의2 제1항 참조).
2. 한국형 헤지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거래의 규모를 제한하였습니다(제272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제80조 제6항 참조). 아울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도 신설되었습니다(별표 1의 3-13-1란 참조).
3.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197호, 2011. 9. 30. 시행\)](#)

2. 근로계약 변경 시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에 대한 예외의 범위 확정 등

: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155호, 2012. 1. 1. 시행)

1.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제17조).

2.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따라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법 제17조 제2항 단서),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i)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ii) 취업규칙, (iii) 단체협약 또는 (iv)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제8조의2).

3.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155호, 2012. 1. 1. 시행\)](#)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임승혁 회계사, 'M&A 세법 실무' 발간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승혁 공인회계사·세무사)
지평지성 임승혁 회계사는 M&A 관련 세법 규정을 정리한 "M&A 세법 실무"를 삼일인포마인을 통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M&A와 관련된 개별 세법 규정을 거래 유형 및 거래당사자 별로 종합적으로 해설하고, 중요한 쟁점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정리하여, M&A 실무 담당자 및 세무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삼일인포마인 - M&A 세법 실무(10% 할인) [Jipyong & Jisung](#)

배성진 변호사, '제조물책임법'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배성진 변호사)

지평지성 배성진 변호사는 지난 9월 27일 사법연수원 제 42기를 대상으로 '특수불법행위법연구' 과목의 '제조물책임법' 파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성진 변호사와 강경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위 과목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김성수 변호사, 제5차 전자소송제도연구 특별위원회에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는 지난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5차 전자소송제도연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전자소송의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 윤종수, 부위원장 최공영, 위원 양정숙, 윤수복, 이상건, 박호균 등 10여 명의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팀 담당직원들이 참석하여 위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Jipyong & Jisung

(영입인사)



김태성 자문위원
eduardokim
@jipyong.com

□ 학력사항

- 경기고등학교 졸업
- 브라질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de São Paulo 경제학과 졸업

□ 경력사항

- 브라질 Ibiznet Consultoria 기획이사
- 브라질 Comtech International 브라질지사 총괄
- 브라질 THC Corporation 이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자문위원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평지성에 새로이 합류하게 된 김태성입니다.

브라질은 물리적 거리로도 가장 먼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더욱 멀리 느껴지는 것은 브라질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성화되어 가는 양국간의 교역이 향후 몇 년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에 걸맞는 정확하고 정돈된 정보를 모아 축적하는 작업이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는 기초일 것이며, 이 일에 지평지성 중남미팀과 브라질 현지파트너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본사복귀 및 귀국인사)



권용숙 변호사
yskwon
@jipyong.com

□ 학력사항

- 대구 오성고 제 27 회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 경력사항

- 제 43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3 기 수료
- 무역협회 주관 국제무역사 자격 취득
-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권용숙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 소재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에서 약 1 년 간 LL.M. 프로그램을 마치고 동 학위를 취득한 후, 10 월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세계 있어 유학기간은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미국법에 대한 소양 및 세계 각국에서 온 변호사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새 장을 열어감에 있어 유학기간의 경험들을 십분 활용하여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각지를 무대로 활발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 현지에 밀착된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